

# 구 매 규 정

대한축구협회

# 구 매 규 정

2006. 1. 6. 제정

## 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협회에서 소요되는 물품, 시설공사, 제조, 대여, 용역 등의 계약업무에 관한 기준과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(담당부서)

구매담당부서에는 구매의뢰부서와 구매부서가 있으며, 구매의뢰 부서는 해당 국실과 파주NFC 등 협회내 인가된 부서를 의미하고 구매부서는 총무부가 된다.

## 제3조(구매의뢰 및 구매절차)

- ① 구매 의뢰부서는 구매의뢰 품의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고, 이를 구매부서에 제출한다.
- ② 물품의 구매 · 제작 · 용역 및 수리의 의뢰는 해당 부서가 제출하는 서식의 구매의뢰서에 의하며, 구매의뢰서에는 품명 · 규격 · 수량 · 지출예산과목을 명기하되 필요시에는 설계도면과 카탈로그, 설명서 등을 첨부한다.
- ③ 구매부서는 구매의뢰서를 검토하고 이에 따라 구매를 집행한다.
- ④ 물품의 구매 시 의뢰부서 책임자와 구매부서의 책임자가 합동으로 검수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⑤ 이미 결재를 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구매를 검토한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 구매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다.

## 제4조(계약의 종류)

계약의 종류에는 공개경쟁에 의한 계약과 수의계약이 있으며, 공개경쟁에는 일반경쟁과 제한경쟁이 있다.

## 제5조(일반경쟁)

- ① 모든 구매는 일반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계약의 목적 · 성질 ·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

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.

- ② 경쟁은 입찰방법으로 하되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.

### 제6조(제한경쟁)

- ① 특수한 성능, 품질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에나 협회가 제반조건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초청 시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.
- ② 제한경쟁계약에 해당되는 계약에는 대표팀 숙소, 승용차, 승합차, 가구, 대회 진행에 필요한 물품 및 용역 등이 있다.

### 제7조(수의계약)

- ①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금액과 관계없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.
- 가) 긴급한 행사
- 나)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
- 다) 특정인의 기술·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·구조·성능·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
- 라) 협회의 후원사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후원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매 계약 하는 경우
- ② 경쟁 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.
- 가) 경쟁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재입찰을 실시하더라고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나) 재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
- 다)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
- ③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를 대비하여 최저견적가로 계약할 수 있다.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개 업체로부터 받은 견적서로 구매할 수 있다.

### 제8조(경쟁 입찰 방법 및 낙찰자 결정)

- ① 구매부서의 계약업무 담당자는 입찰 전에 계약수량, 이행전망, 이행 기간, 수급 상황,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결정된 예정가격을 작성하고, 이를 봉하여 개찰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.

- ② 계약업무 담당자는 지정된 시간까지 입찰서를 접수한 후 입찰서 접수마감을 선언하고 입찰서를 개봉하여 유효입찰인가를 확인하고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적격자를 낙찰자로 한다.
- ③ 예정가격 85% 이상의 입찰자 중에서 최저가격 입찰자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용도와 과거실적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.
- ④ 낙찰자의 최종 결정은 사안별로 구분하여 정한다.

#### **제9조(계약서의 작성)**

- ① 계약 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, 계약금액의 이행 기간, 계약보증금, 위험부담, 지체상금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계약 담당자는 구매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와 계약서 작성이 불필요한 경우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.

#### **제10조(대금의 지급)**

공사, 제조 및 구매된 물품의 대금 지급은 검사자의 검사를 필한 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계약조건상 선급금 또는 중도금지급을 요청할 시는 예외로 한다. 이때 검사자는 관련 부서장과 사용자 등으로 구성한다.

#### **제11조(준용규정)**

계약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,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.

#### **제12조(시행일)**

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